

임원보수규정

제정 2011. 7. 25. 규정 제102호
 [시행 2014.7.9.] [규정 제182호, 2014.7.9., 일부개정]
 [시행 2014.9.19.] [규정 제191호, 2014.9.19., 일부개정]
 [시행 2015.10.30.] [규정 제236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의 보수 및 퇴직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보수”란 기본연봉, 성과연봉,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기초생활지원 및 기본역할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성과연봉”이란 매년 임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을 말한다.
4. “퇴직급여”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말한다.
5. “퇴직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6.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신설 2015.10.30.>

제3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정부가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개정 2014.7.9.>

② 임원의 기본연봉은 매월 12분의 1씩 재단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4.7.9.>

제4조(성과연봉) 임원의 성과연봉은 평가 대상연도 기본연봉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7.9.>

제5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임원의 보수는 임기 개시일 및 퇴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7.9.>

② 평가대상기간중 상위직 연임 시 각 직위별로 재임기간과 기본연봉을 구분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4.7.9.]

제6조(성과연봉의 차감) 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이 부(-)가 될 경우에는 해당 평가대상 연도 말에 적립된 퇴직급여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특별상여금) 이사장은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퇴직급여 <신설 2015.10.30.>

제7조의2(퇴직급여제도의 선택)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본조신설 2015.10.30.]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사유) 임원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개정 2015.10.30.>

1. 임기만료 퇴임
2. 의원면직
3. 사망으로 인한 퇴임
4. 파면,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등으로 인한 퇴임

[제목개정 2015.10.30.]

제9조(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는 퇴직당시의 30일분의 평균임금(이하 “기초액”이라 한다)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인 월의 경우에는 퇴직 해당 년에 적용되는 기준 지급률에 해당월수를 곱한 비율의 12분의 1을 적용하되, 1월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7.9., 2015.10.30.>

② 제1항의 기준 지급률은 근속기간 매 1년에 1개월로 한다.

③ 임원이 상임이사, 감사, 이사장을 연임하여 근속하였을 때에는 기초액에 각 재임기간별 해당 기준지급률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상위직의 재임기간에 합산한다.

[제목개정 2015.10.30.]

제10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삭제 <2014.9.19.>

제11조(퇴직수당) ① 삭제 <2014.7.9.>

②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파면, 해임권고, 징계면직 등으로 인한 퇴임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의 반액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5.10.30.>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파면으로 인한 면직결정 통보를 받은 직원의 형벌 또는 처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추정되는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판결의 확정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직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 삭제 <2014.7.9.>

제13조(사망자의 퇴직급여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에 준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제14조(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현행 「보수규정」(개정 2010.12.27.규정 제 78호)과 「성과연봉제규정」(제정 2011.1.1.규정 제76호)은 본 「임원 보수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규정 제182호, 2014.7.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1호, 2014.9.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36호, 2015.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